

업무규정(2016)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MANA TOHU MĀTAURANGA O AOTEAROA

QUALIFY FOR THE FUTURE WORLD
KIA NOHO TAKATŪ KI TŌ ĀMUA AO!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2016)

목차

| 제1장 서문 | 페이지 |
|--|-----|
| 1. 제목 | 3 |
| 2. 발효 | 3 |
| 3. 이전 버전의 폐지 및 대체 | 3 |
| 4. 법률 문서로서의 규정 | 3 |
| 5. 규정의 목적 | 3 |
| 6. 규정의 범위 | 3 |
| 제2장 본 규정을 이해하는 방법 | |
| 7. 일반 용어 정의 | 4 |
| 제3장 서명 교육기관이 되는 방법 | |
| 8.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하는 규정 행정기관의 기능 | 6 |
| 9.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 6 |
| 10. 서명 교육기관의 요청 시 규정 행정기관은 서명 교육기관을 제외할 수 있음 | 6 |
| 제4장 서명 교육기관의 의무 | |
| 마케팅 및 프로모션 | |
| 11. 결과 1: 마케팅 및 프로모션 | 7 |
| 12. 절차 | 7 |
| 대리인 | |
| 13. 결과 2: 대리인 관리 및 감독 | 7 |
| 14. 절차 | 7 |
| 제안, 등록, 계약 | |
| 15. 결과 3: 제안, 등록, 계약 | 8 |
| 16. 절차 | 8 |

| | |
|--------------------------------------|----|
| 이민 문제 | |
| 17 결과 4: 이민 문제 | 9 |
| 18 절차 | 9 |
| 오리엔테이션 | |
| 19 결과 5: 오리엔테이션 | 9 |
| 20 절차 | 9 |
| 안전 및 복지 | |
| 21 결과 6: 안전 및 복지 | 9 |
| 22 절차: 일반사항 | 9 |
| 23 절차: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 | 10 |
| 24 절차: 10세 미만 외국 유학생 | 10 |
| 25 절차: 학습 능력 부족이 우려되거나 장애가 있는 외국 유학생 | 10 |
| 26 절차: 숙소 | 11 |
| 학생 지원, 조연 및 서비스 | |
| 27 결과 7: 학생 지원, 조연 및 서비스 | 11 |
| 28 절차 | 11 |
| 철회 및 폐쇄 관리 | |
| 29 결과 8: 철회 및 폐쇄 관리 | 12 |
| 30 절차 | 12 |
| 불만 처리 절차 | |
| 31 결과 9: 불만 처리 | 12 |
| 32 절차 | 12 |
| 외국 유학생 계약 분쟁 조정 제도 준수 | |
| 33 결과 10: 외국 유학생 계약 분쟁 조정 제도 준수 | 12 |
| 34 절차 | 12 |
| 제5장 | |
| 규정 위반 | |
| 35 규정 위반 신고 | 13 |
| 36 불만 제기 또는 의뢰 사안에 대한 규정 행정기관의 대응 | 13 |
| 37 규정 준수 상태 점검 | 13 |
| 38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14 |
| 제6장 | |
| 규정 행정기관 | |
| 39 보고 및 발표 의무 | 15 |
| 40 조건 및 규정준수 고지 내용 공개 | 15 |

제1장 서문

1. 제목

본 규정은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2016)이다.

2. 발효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3. 이전 버전의 폐지 및 대체

1. 본 규정 발효 직전에 적용되던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전 버전)은 폐지되며 본 규정으로 대체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교육기관에 등록한 외국 유학생의 경우 계속 유효하며(폐지 및 대체되지 않은 것처럼) 본 규정을 배제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4. 법률 문서로서의 규정

본 규정은 법률 문서이고 2012년 법률제정법 (Legislation Act)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문서 (disallowable instrument)이며 이 제정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다.

5.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유학생 교육 목적을 지원하는 데 있다.

- a. 서명 교육기관들이 유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b. 가능한 한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

6. 규정의 범위

1. 본 규정은 1989년 교육법(Education Act)이 정한 기타 품질 보증 내용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 a. 외국 유학생을 위해 서명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결과
 - b. 서명 교육기관이 외국 유학생의 복지, 성취 및 권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절차
2. 본 규정은 뉴질랜드 밖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서명 교육기관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규정 행정기관은 다음 학생의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a. 내국인 학생에서 외국 유학생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학생
 - b. 통신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제2장 본 규정을 이해하는 방법

7. 일반 용어 정의

- 1.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동법은 1989년 교육법(Education Act)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교육기관 또는 서명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하며 하도급 대리인도 포함된다.

규정 행정기관이란 동법 제238FA(1)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지명 보호자란 18세 미만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 및 숙박 제공자로 서면을 통해 지명한 친척, 가까운 가족 친구를 의미한다.

내국인 학생은 동법 제2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DRS란 동법 제238J조에 규정된 외국 유학생 계약 분쟁 조정 제도(Dispute Resolution Scheme)를 의미한다.

DRS 규칙이란 동법 제238M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을 의미한다.

실사란 구속력 있는 약정을 맺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개 및 검증을 획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교육 품질 보증 기관이란 서명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품질 보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동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업, 코스, 프로그램, 연수 제도가 포함된다.

- a. 동법 제4E조, 제18장 또는 제20장에 따라 승인 또는 면제된 과정
- b. 교육기관이 제공하도록 인가를 받은 과정(동법 제18장 또는 제20장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및
- c. 교육기관이 관련 평가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동의를 받은 과정(동법 제18장 또는 제20장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하다란 개인이 서명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제안을 수락한 후 해당 학생을 서명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학생으로서 공식 기록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도 같은 의미이다.

퇴거란 한 개인을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업료 보호 제도란 동법 제253(1)(e)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서 승인된 제도를 의미한다.

홈스테이는 한 가정 또는 가족의 집에서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며 4명 이하의 외국 유학생들이 숙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외국 유학생은 동법 제238D조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법적 후견인이란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법정이나 유언서에 의해 지명을 받아 해당 학생의 복지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해당 학생의 모국에서 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가 호스텔이란 2005년 교육(호스텔) 규정(Education (Hostel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호스텔을 의미한다.

부모란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복지와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교육기관이란 동법 제238D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국 송환이란 사람을 출신국이나 원래의 국적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거주 보호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 a. 홈스테이 주인
- b. 인가 호스텔 관리자 또는 인가 호스텔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관리를 책임지는 기타 담당자
- c. 지명 보호자, 또는
- d. 임시 숙소의 경우 감독자

학교 호스텔이란 재학 중인 1-6학년 학생이거나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된 10세 이하인 외국 유학생용으로 본 규정 행정기관이 승인하고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인가 호스텔을 의미한다.

서명 교육기관이란 본 규정에 서명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하도급 대리인이란 대리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대리인이 계약한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 2. 본 규정에서 언급되는 사람의 나이는 해당 사람의 지난 마지막 생일의 나이를 말한다.
- 3.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 중 본 규정이 아닌 동법에서 정의된 용어는 동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3장 서명 교육기관이 되는 방법

8.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하는 규정 행정기관의 기능

규정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 b.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서 평가
 - i. 제9항에 명시된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 ii. 제5항과 제6항에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 및 범위

9.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신청기관은 교육기관이다.
- b. 신청기관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한다.
- c. 신청기관은 허용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 및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 d. 신청기관은 본 규정이 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고 본 규정이 정한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갖추고 있다.
- e. 본 규정 행정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을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으로 승인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달리 간주하지 않는다.

10. 서명 교육기관의 요청 시 규정 행정기관은 서명 교육기관을 제외할 수 있음

서명 교육기관의 요청 시 본 규정 행정기관은 해당 서명 교육기관을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서명 교육기관의 의무

마케팅 및 프로모션

11. 결과 1: 마케팅 및 프로모션

서명 교육기관은 유학을 고려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하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2. 절차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b. 외국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항상 최신 정보 유지
- c. 외국 유학생들에게 최소한 다음에 관한 정보 제공
 - i. 서명 교육기관의 품질 보증 결과
 - ii. 외국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직원, 시설, 장비
 - iii. DRS
 - iv. 외국 유학생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학습 결과(해당되는 경우 이후의 공부 및 취업 진로 포함)
 - v. 외국 유학생의 예상 수업료 및 생활비
 - vi. 숙소 및 교통 또는 이러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대리인

13. 결과 2: 대리인 관리 및 감독

서명 교육기관은 그들을 대신하도록 계약한 대리인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들에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데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및 조언 제공
- b. 유학을 고려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성실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응대

14. 절차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평판 조사를 실시하고 기록하여 대리인들이 허위, 오도, 기만적인 행위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련된 적이 없었는지 최대한 폭 넓게 확인
- b. 각 대리인과 서면 계약 체결
- c. 해당 대리인 또는 이들의 하도급 대리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증거가 있는 경우 대리인 계약 해지
 - i. 허위, 오도, 기만적인 행위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심각한하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행위에 관련된 경우
 - ii. 서명 교육기관이 본 규정을 준수할 수 없도록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d. 대리인이 서명 교육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이용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확인

제안, 등록, 계약

15. 결과 3: 제안, 등록, 계약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원하는 교육적 결과에 적합한 과정을 찾아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b.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서명 교육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의 관심사와 의무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 c. 적절한 문서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제공

16. 절차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최소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 품질 보증 기관에 의한 최근 평가 결과
 - b. 동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본 규정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규정준수 고지 및 조건을 유학을 고려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c. 제공되는 교육 및 자격증 수여 여부 등의 교육 결과
 - d. 제29항 및 제30항의 결과 및 절차에 따른 환불 조건
 - e. 직원, 시설, 장비
 - f.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
 - g. 서명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받기 위한 보험 및 비자 요건
 - h. 본 규정 및 DRS 규칙
 - i. 교육 과정 제공과 관련된 총 비용
2. 각 서명 교육기관은 제안된 교육 과정이 동법에 따른 것이며 학생의 기대, 영어 사용 능력 및 학습 능력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각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서명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각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본 규정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서명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수감과 관련된 학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한다.
4. 각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서명 교육기관과 각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사이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 시작 및 마감일, 등록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5. 각 서명 교육기관은 실행 가능한 경우 외국 유학생이 2주 이상의 교육 과정을 위해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해당 학생이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a. 다음 구간에 대한 학생의 여행
 - i. 뉴질랜드 왕복 여행
 - ii. 뉴질랜드 국내 여행
 - iii. 교육 과정에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질랜드 외부 여행
 - b. 뉴질랜드 국내 의료 처치(진단, 처방, 수술, 입원 항목 포함)
 - c.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한 학생의 본국 송환 또는 퇴거(본국 송환 또는 퇴거를 돕기 위한 가족의 여행 경비 포함)
 - d.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학생의 사망
 - i. 가족의 뉴질랜드 왕복 여행 경비
 - ii. 사체의 본국 송환 또는 퇴거 경비
 - iii. 장례 비용
6. 각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경우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민 문제

17. 결과 4: 이민 문제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2009년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거하여 교육 과정을 수강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도록 허락하거나 계속 묵인할 수 없다.
- b.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사를 수행하여 외국 유학생이 2009년 이민법에 의거하여 자신이 등록한 교육 과정을 수강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8. 절차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된 각 외국 유학생이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는 데 필요한 이민 자격이 있는지 확인
- b. 외국 유학생의 비자 조건 위반에 대해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국(Immigration New Zealand)에 신고
- c. 등록 해지 시 뉴질랜드 이민국에 통지

오리엔테이션

19. 결과 5: 오리엔테이션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과정을 시작하려는 외국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 절차

-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오리엔테이션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a. 각 외국 유학생에게 기관의 모든 관련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와 조언 제공
 - b. 각 외국 유학생에게 해당 서명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및 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조언 제공
 - c. 외국 유학생 지원을 담당할 전담 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 제공

- d. 외국 유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제공
- e. 외국 유학생이 내부 및 외부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f. 등록 해지에 관한 정보 제공
- 2.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학생과 동행하는 거주 보호자가 해당 학생에게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 정보 또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 및 복지

21. 결과 6: 안전 및 복지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을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 b. 외국 유학생의 복지를 위해 적합한 지원 제공
- c. 가능한 한 외국 유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보장

22. 절차: 일반사항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이 유발하거나 외국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동 발생 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b. 부적절한 행동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그 내용을 직원 및 학생들에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시행
- c. 외국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조언
 - i. 건강 및 안전 문제(교내 및 교외 활동 모두) 보고 및 처리
 - ii. 응급상황(교내 및 교외 활동 모두) 대처
 - iii.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이용
 - iv. 뉴질랜드 경찰 및 청소년 가족 업무부(Child, Youth and Family)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과 유기적 공조
- d. 각 외국 유학생 및 가까운 친척의 현재 연락처 세부 정보 보관
- e. 외국 유학생이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직원 1명이 항시(1일 24시간, 주 7일) 대기하도록 조치

23. 절차: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

1.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10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등록시킬 수 없다.
 - i. 교육 과정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적절히 감독되는 학생 단체에 속한 학생 또는
 - ii. 거주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학생
 - b. 학생의 부모, 법적 후견인 및 거주 보호자의 현재 연락처 세부 정보 보관
 - c. 학생의 복지 및 학업 진행 상황에 대해 학생의 부모, 법적 후견인 및 거주 보호자와 효과적인 연락 유지
 - d.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주시하여 해결하도록 최소 1명의 전담 직원 배치
 - e. 외국 유학생의 해당 서명 교육기관 등록이 종료된 후 해당 학생의 보호 인계 계획에 대한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확인서 수신
2. 본 조항은 제22항의 요건과 더불어 적용된다.

24. 절차: 10세 미만 외국 유학생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10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경우 학교 호스텔에서 숙박하지 않는 한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과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2. 본 조항은 제22항 및 제23항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적용된다.

25. 절차: 학습 능력 부족이 우려되거나 장애가 있는 외국 유학생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학습 능력 부족이 우려되거나 장애가 있는 외국 유학생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시행
 - b.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또는 18세 이상 학생의 가까운 친척에게 학생이 학습 능력 부족이 우려되거나 장애가 있음을 알림
 - c. 1993년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의 원칙에 일치하며 해당되는 경우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뉴질랜드 경찰 및 청소년 가족 업무부(Child, Youth and Family)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 및 본 규정 행정기관에 보고
2. 학습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학생이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명 교육기관이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a. 학생이 현저한 가해, 착취로부터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 b.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를 적절히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장애가 있는 학생이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
 - a. 신체, 감각, 인지, 심리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이러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해당 학생의 참여, 학습 및 성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용하고 참여 및 학습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프로그램이나 학습 환경 또는 전문 장비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4. 본 조항은 제22항, 제23항, 제24항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적용된다.

26. 절차: 숙소

1. 거주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학생의 숙소가 안전하고 적합한 상태이며 모든 규정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b. 거주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 점검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c. 숙소 문제 발생 시 학생 및 학생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과 효과적으로 연락하며, 해당 문제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학생을 적절한 숙소로 이동시키는 등 책임지고 문제 해결
 - d. 충분한 학생 면담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학생의 연령, 거주 기간 및 기타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거주 보호의 상태를 점검 및 검토
 - e. 지명 보호자가 서명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이 해당 지명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서명 교육기관은 학생 보호에 책임이 없다고 동의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서 수신
 - f. 외국 유학생이 해당 숙소의 다른 연령대 학생들과 적절히 분리되도록 확인
 - g. 학생이 숙소에서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확인
2. 서명 교육기관이 제공하거나 추천한 숙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학생의 숙소가 안전하고 적합한 상태이며 모든 규정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b. 숙소 문제 발생 시 학생과 효과적으로 연락하며, 해당 문제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등 책임지고 문제 해결
3. 스스로 숙소를 구하는 18세 이상 외국 유학생과 관련하여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학생에게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여기서 숙소 문제에는 학생의 숙소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건강 및 복지상의 문제가 포함된다.

학생 지원, 조언 및 서비스

27. 결과 7: 학생 지원, 조언 및 서비스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들의 교육적 결과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8. 절차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서명 교육기관이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이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하며 최신 내용인지 확인
- b. 외국 유학생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 및 의무, 가능한 경우 학생이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수락할 때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 c. 외국 유학생들에게 다음에 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 i.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 ii.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지역사회 지원
- d. 해당되는 경우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후의 공부 또는 경력 개발 등 진로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 e. 해당되는 경우 외국 유학생들이 다음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i. 뉴질랜드의 최저 임금 및 노동 조건
 - ii. 비자 조건에 따라 허용된 최대 근로 시간

철회 및 폐쇄 관리

29. 결과 8: 철회 및 폐쇄 관리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해 지불한 수업료가 학생의 등록 철회, 교육 과정 종료 또는 서명 교육기관 폐쇄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0. 절차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환불 정책이 합리적이며 법적 요건과 일치되는지 확인
 - b. 외국 유학생(또는 18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이러한 환불 정책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2. 환불 정책에는 다음 상황에 대한 환불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학생이 유학 비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b. 학생의 자발적인 철회
 - c.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교육 품질 보증 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단하는 서명 교육기관이 학생과 계약한 교육 과정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 d. 서명 교육기관이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 e. 서명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3. 제(2)호(c) 또는 (d)의 상황의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납부된 수업료 또는 납부 수업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음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4. 문제의 금액을 학생(또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에게 환불하거나
5. 학생 또는 본 규정 행정기관 또는 수업료 보호 제도 담당 기관이 지시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학생(또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동의한 다른 서명 교육기관으로 이체

불만 처리 절차

31. 결과 9: 불만 처리

서명 교육기관은 모든 외국 유학생이 불만 처리를 위한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절차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외국 유학생이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 절차 마련
 - b.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절차에 대해 알림
2. 각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a. 학생이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절차를 사용한 결과 또는 경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규정 행정기관이나 DRS 및 기타 관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 b. 본 규정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DRS에 의거하여 재정 관련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

외국 유학생 계약 분쟁 조정 제도 준수

33. 결과 10: 외국 유학생 계약 분쟁 조정 제도 준수

서명 교육기관은 DRS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4. 절차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DRS 규칙을 숙지하고 분쟁과 관련된 경우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DRS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본 규정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규정 위반

35. 규정 위반 신고

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본 규정 위반 사실을 규정 행정기관에 신고
 - b. 본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관련 문제를 행정기관에 의뢰
2. 규정 행정기관은
 - a. 불만 제기 또는 의뢰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발표해야 한다.
 - b. 불만 제기 또는 의뢰 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정할 수 있다.

36. 불만 제기 또는 의뢰 사안에 대한 규정 행정기관의 대응

1. 제35항에 의거한 불만 또는 의뢰 사안이 접수되면 규정 행정기관은 해당 불만 또는 의뢰 사안이 규정 위반과 관련된 점이 의심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본 규정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한 기록 및 조사
 - b.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뢰한 사람에게 조사 결정 사실 통지
3.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규정 행정기관은 다음 방법들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불만 또는 의뢰 사안을 다른 기관에 회부
 - b. 불만 또는 의뢰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처리
 - c. 불만 또는 의뢰 사안 종료

4. 불만 또는 의뢰 사안의 조사 시, 본 규정 행정기관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도움(예: 언어 장벽 극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뢰하는 사람을 지원(또는 해당자가 지원을 받도록 추천)할 수 있다.

37. 규정 준수 상태 점검

1. 각 서명 교육기관은 본 규정에 명시된 필수 결과 및 절차를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여 기록해야 한다(본 규정 행정기관이 정한 간격으로).
2. 본 규정 행정기관은 서명 교육기관의 자체 검토 보고서 및 규정 행정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꼼꼼히 살펴 정해진 결과 및 절차를 기준으로 각 서명 교육기관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3. 본 규정 행정기관은 서명 교육기관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해당 서명 교육기관의 성과를 조사할 수 있다.
4.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 a. 규정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거나 본 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보고 등의 정보가 행정기관에 제공될 경우에 진행될 수 있다.
 - b. 조사에는 규정 행정기관이 다음 단계 등을 수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해당 서명 교육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 i. 방문 실시
 - ii. 서명 교육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문서 조사 및 확보
 - iii. 해당되는 경우 직원 및 학생들과의 면담

5. 서명 교육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문서 확인, 직원 및 학생들과의 접촉에 대한 규정 행정기관의 합당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6. 규정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교육 품질 평가 기관 및 관련 정부 기관과 의논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본 규정의 개선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한 해결책 합의 도출
 - b.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 품질 평가 기관 및 관련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수신 및 고려

38.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본 규정 행정기관은 동법 제238G조에 따라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장 규정 행정기관

39. 보고 및 발표 의무

1. 본 규정 행정기관은 연례 보고서에 본 규정 관리 활동에 대한 보고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 과정에서 교육 품질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 또는 본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안을 발견할 경우 규정 행정기관은 해당 문제 또는 위반 사안을 교육 품질 관리 기관 및 관련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제(4)호에 명시된 제한된 목적으로, 규정 행정기관은 본 규정 위반 사안의 조사 요약 및 결과를 전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보안조치 및 편집을 거쳐야 한다.
4. 제(3)호에서 언급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교육기관, 학생 및 기타 교육 관련 이익 단체에게 최신 정보 제공
 - b. 본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의사 결정 과정 예시
5. 본 규정 행정기관은 교육 기관 및 외국 유학생들에게 본 규정을 공개하기 위해 합당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40. 조건 및 규정준수 고지 내용 공개

본 규정 행정기관은 동법 제18A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특정 조건 및 발표된 규정준수 고지 내용을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3월 2일 웰링턴

Hon Steven Joyce,
고등교육기술고용부 장관

요약 설명

이 요약 설명은 본 규정의 일부는 아니나 전체적인 영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본 업무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며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본 규정은 1989년 교육법(Education Act) 제18A장에 의거하여 고등교육기술고용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본 규정은 규정 행정기관 및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으로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서명 교육기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규정 행정기관에 대한 요건에는 본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신청서 접수 및 연례 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요건이 포함된다.

서명 교육기관에 관한 요건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이다.

- 유학을 고려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제공
- 서명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관리 및 감독
- 외국 유학생들이 서명 교육기관의 제안, 등록 및 이들과의 계약 체결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 2009년 이민법(Immigration Act) 준수 확인
- 적절하고 유용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공
-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 제공
- 외국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언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 유학생의 등록 철회 또는 교육 과정이나 서명 교육기관 폐쇄에 대한 적절한 관리
- 불만 사안 처리 절차 이용 경로 제공

본 규정은 또한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제공한다.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MANA TOHU MĀTAURANGA O AOTEAROA

QUALIFY FOR THE FUTURE WORLD
KIA NOHO TAKATŪ KI TŌ ĀMUA AO!

New Zealand Government